
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소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07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6. 25.

발 의 자 : 김소희 · 주호영 · 강승규
우재준 · 성일종 · 이달희
김상훈 · 장동혁 · 최수진
김승수 · 김위상 · 박수민
이현승 · 백종현 · 인요한
김예지 · 고동진 · 안상훈
윤영석 · 엄태영 · 박충권
김미애 · 권영진 의원
(2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교시설의 환경위생에 대한 유지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면서, 오염공기·세균·먼지 등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.

최근 코로나-19 등 공기 중 전파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강조되고 있지만, 현행법상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는 바이러스가 제외되어 있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, 교직원 등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‘바이러스’를 명시함으로써 학생 등 학교시설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먼지 등의”를 “먼지·바이러스 등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 위생)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시설[교사대지(校舍垓地)·체육장, 교사·체육관·기숙사 및 급식시설,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]에서의 환기·채광·조명·온도·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, 상하수도·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, 오염공기·석면·폐기물·소음·휘발성유기화합물·세균· <u>먼지</u>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·식품·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	제4조(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 위생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먼지·바이러스 등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~ ⑦ (생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